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. 6. 14 선고 2023가단22999 판결 [보증채무금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5. 24.

판 결 선 고 2023. 6. 14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764,918원 및 그 중 38,765,129원에 대하여 2023. 3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21. 5. 24. 원고와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사이의 (차량번호 1 생략)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(약정기간 60개월, 월 납부액 1,574,790원, 연체이율 연 24%)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, 소외 회사가 월 납부액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23. 3. 16. 현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0,764,918원 및 그 중 원금 38,765,129원에 대하여 채무액 확정일 다음날인 2023. 3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4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민영